

서민

모든 공무원 행정학 대비  
고득점에 필수적인 행정학 법령 총정리  
2025 정부조직 개편내용 완벽 반영

공  
서

2026  
김종규  
법령노트  
선행행정학



## 이공이육 김종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을 펴내며

최근 10여년간 공무원행정학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력”과 “출제위원의 출제기술”이 상호인과성을 띠면서 서로 공진화(co-evolution)하여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7급의 경우 PSAT 도입이후 이미 행정학이 2차과목 중 주요 과목이 되었고, 9급의 경우도 필수과목 전환이후 행정학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행정학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출제위원들 또한 여러분들의 향상된 실력을 의식하여 난이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행정학 난이도가 이처럼 갈수록 높아져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법령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행정학에서 법령문제의 출제비율은 10여년 전에 비하여 무려 2~3배나 높아졌습니다. 10년전 평균 7.5%였던 것이 2024년 평균 23%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2025 국가9급 행정학에서는 무려 5문항(25%), 2024 지방9급에서는 5문항(25%), 2023 국가7급에서는 8문항(32%)이나 출제되어 이러한 문항들이 킬러문제가 되어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령문제는 주로 실무분야에 해당하는 인사행정(「국가공무원법」과 인사관련 대통령령), 재무행정(「국가재정법」 등), 지방자치(「지방자치법」 등) 편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법률의 하위규정인 대통령령에서 까지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관련 법령(「책임운영기관설치법」,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들이 상당 폭 개정되어 내년도 시험에서는 이러한 법령문제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령문제는 틀려도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더 이상 행정학에서 고득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법령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김종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이 출간된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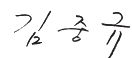
2026 김종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은 법령문제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행정학과 관련된 80여개 법령을 선행정학 각종 교재 순서에 맞추어 주요 조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령조문 나열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개념”과 “강학상(이론상) 개념”이 서로 다른 경우 개념간 괴리로 인한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령조문 좌우 날개여백에 강학상(이론상) 개념도 함께 표기하여 법령과 이론이 서로 연계되는 입체적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법령조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들도 함께 수록하여 법령내용과 기출문제간 연결성도 높였습니다. 이번 2026 법령노트 선행정학은 2025 출제경향과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을 완벽 반영하여 출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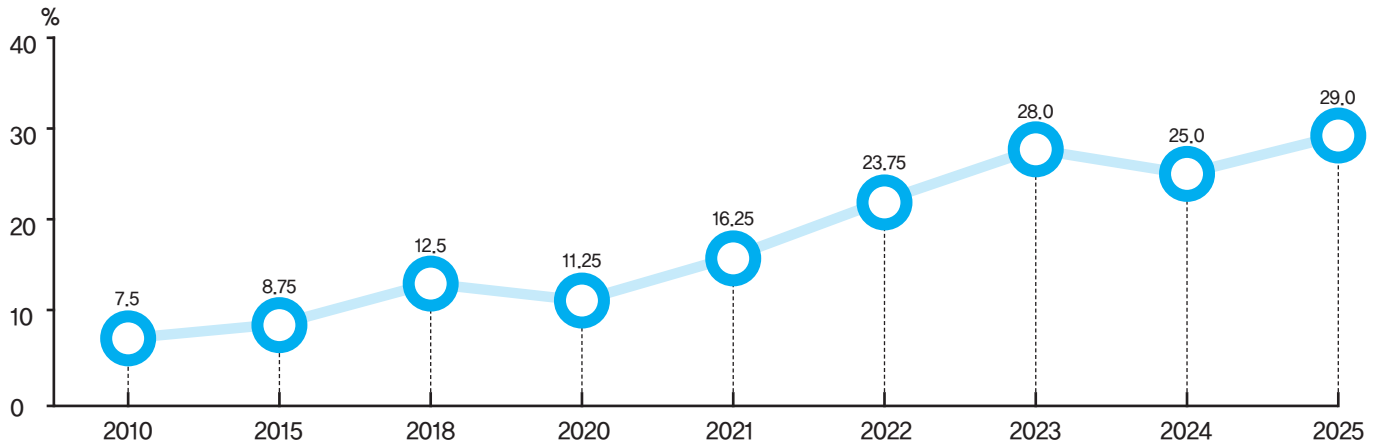
법령을 통하여 행정학 이론은 물론, 기출까지 모두 체크할 수 있는 다목적 입체교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정학 마무리와 고득점에 큰 도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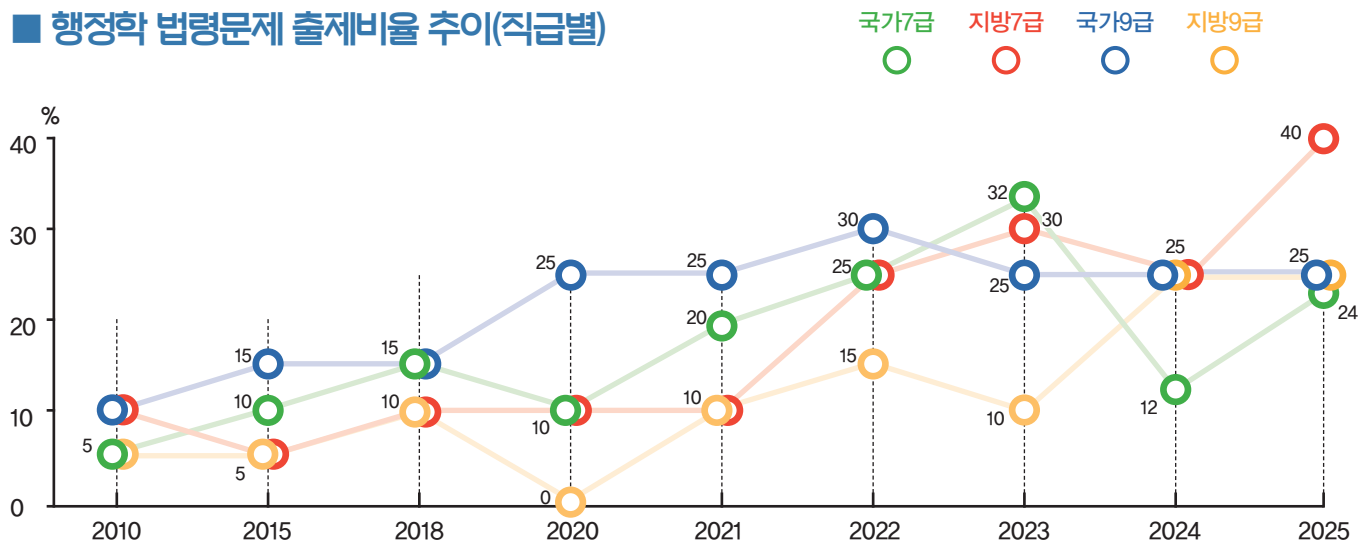
2025.10.31. 카스파 연구실에서

지은이 

### ■ 행정학 법령문제 출제비율 추이(전체 평균)



### ■ 행정학 법령문제 출제비율 추이(직급별)



## 이 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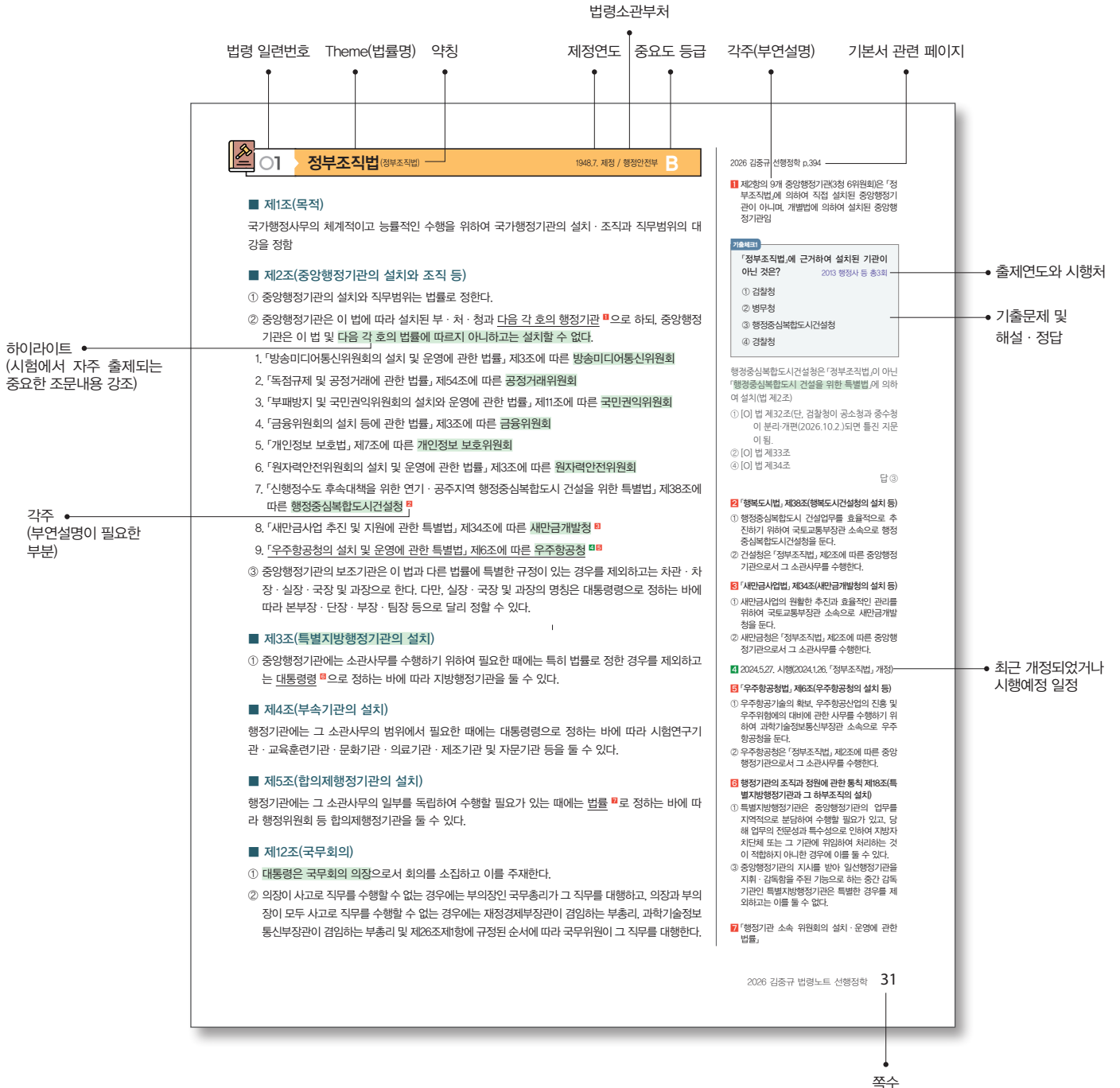
1. 최근 행정학시험에서 고난도 법령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2025 국가9급 6문, 2024 국가9급 5문, 2024 지방9급 5문, 2023 국가7급 8문 등). 이 책은 이러한 경향에 대비한 책입니다.
2. 최근 언뜻 보면 법령문제가 아닌 듯한 생소한 고난도 문제의 지문들도 사실은 교과서에 없는 법령조문들을 인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3. 행정학 수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고난도 법령문제에 대비하여 행정학 관련 법령 80여개를 정밀 분석하여 수험 적합한 방향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고 혼란과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조문을 수록하지 않고 행정학과 깊게 관련된 중요한 조문만을 선별적으로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수험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하이라이트**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6. 최근 개정되었거나 향후 시행될 내용은 우측 날개에 녹색 글씨■로 첨삭 표기해 두었습니다.
7.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 위임(인용)한 경우 그 내용을 우측 날개에 주홍색 글씨■로 부가 표기해 두었습니다.
8. 법령조문 내용에 해당하는 일부 행정이론이나 제도를 알기 쉽게 강화상(학문적) 용어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9. 모든 법령에 대하여 그 소관부처와 제정연도를 표기해두었습니다.
10. 해당 법령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날개에 수록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1. 법령별로 중요도를 ABCD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12. 법령별로 기본서 페이지를 표기하여 기본서 학습과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13. 법령 제목과 주요 용어를 찾아보기 쉽도록 교재 뒤쪽에 "찾아보기"를 두었습니다.
14. 이 교재는 어디까지든 고난도 법령문제에 대비한 보조교재 일뿐, 주교재는 아니니 이 교재를 기본서처럼 회독하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5. 2026년 1월과 3월 법령대비 단기특강이 공단기에서 예정되어 있으니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학습하시면 학습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16. 법률뿐 아니라 관련 시행령 등 대통령령이나 훈령·예규도 필요한 조문들은 수록하여 법령간 연계성 및 완벽함을 기하였습니다.
17. 이 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날개의 기출체크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당 법령조문을 확인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고난도 법령문제, 이렇게 대처하자!

1. 중요한 법령내용은 기본서와 기출집 등 선행정학 교재에 거의 다 있습니다.
2. 중요하지 않은 법령내용까지 세세하게 모두 알 수는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3. 법령문제에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는 공부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예상치 못한 법령문제에 응급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령(매뉴얼)은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이 법령자료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어디까지나 기본교재에 부가하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법령내용을 따로 무조건 암기하려 하지 말고 가급적 지금까지 공부해온 이론적인 내용과 연결시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욱 입체적이고 탄탄한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7. 최근 제·개정된 법령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법령은 항상 이슈가 되었거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8. 모든 법령은 소관부처가 있습니다(소관부처를 바꾸어 출제하는 것이 기출패턴입니다).
9. 외국인도 안보·기밀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상 대부분의 권한을 가집니다.
10. 행정기관 위원회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되고 위원수는 15명(홀수)이 가장 많으며, 임기는 2~3년, 한차례 연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1. 중요한 행정기관 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들어가는 3인방은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12. 법령은 모든 조문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슈화(쟁점)가 되었거나 최근 개정된 조문들이 더 중요합니다.
13. 법 제1조 "목적"에 관한 지문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제1조(목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공통된 행정이념은 능률성과 민주성, 공정성과 공익성입니다. 예컨대 대개 인사관련법령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윤리관련 법령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 법 제2조 "적용범위" 또는 "정의"가 법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범위가 법마다 다르며, "각급 학교"도 사립학교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영란법」이나 「전자정부법」에서는 사립학교도 포함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제외됩니다.
15. 기금도 예산과 그 일정, 대상사업 등이 거의 동일합니다(성인지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국회 승인 등).
16. 본조문(원칙)만 인용하고 단서(예외) 조항은 생략되어도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17. 각종 제도들은 제·개정(도입)된 연도와 시행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특히 예산제도는 1년 시차가 있습니다).
18.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사, 예산, 감사, 전자정부 등에 관해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 최근 중요한 행정제도들의 역사와 변천에서 고난도 킬러문제가 많이 나오니 우리나라의 중요한 행정제도(공무원연급제도, 중앙인사기관, 중앙예산기관, 공무원노조제도, 지방자치제도, 전자정부 등)는 해당 법령의 연혁(history)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이 책의 구성과 특징

## S T R U C T U R E



C O N T E N T S

제1장 행정학의 기초이론 관련법령

|                     |    |
|---------------------|----|
| 01 대한민국 헌법          | 11 |
| 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15 |
| 03 사회적기업육성법         | 16 |
| 04 행정규제기본법          | 17 |
| 05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 19 |

제2장 정책론 관련법령

|              |    |
|--------------|----|
| 0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23 |
|--------------|----|

제3장 조직론 관련법령

|                              |    |
|------------------------------|----|
|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29 |
| 01 정부조직법                     | 31 |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35 |
| 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37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0 |
| 0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41 |
| 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44 |
| 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46 |

제4장 인사행정론 관련법령

|                               |    |
|-------------------------------|----|
| 01 국가공무원법                     | 51 |
| • 공무원임용령                      | 61 |
| • 공무원임용시험령                    | 64 |
| • 전문경력관규정                     | 65 |
| •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 66 |
| •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67 |
|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등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69 |
|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72 |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74 |
| • 공무원 징계령                     | 76 |

|                                 |     |
|---------------------------------|-----|
| • 소청절차규정                        | 77  |
| • 적극행정운영규정                      | 78  |
| •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 80  |
| • 공무원보수규정                       | 81  |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83  |
| 02 외무공무원법                       | 84  |
| 03 경찰공무원법                       | 85  |
| 04 소방공무원법                       | 86  |
| 05 교육공무원법                       | 87  |
| 06 지방공무원법                       | 88  |
| 07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91  |
| 08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93  |
| 09 공무원연금법                       | 94  |
| 10 공직자윤리법                       | 97  |
| 1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101 |
|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104 |
| • 공무원 행동강령                      | 107 |
|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 109 |
| 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111 |
|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14 |

제5장 재무행정론 관련법령

|                          |     |
|--------------------------|-----|
| 01 국가재정법                 | 117 |
| • 국가재정법 시행령              | 130 |
| 02 정부기업예산법               | 133 |
| 03 국세기본법                 | 134 |
| 04 국고금관리법                | 135 |
| 05 국가회계법                 | 137 |
| • 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139 |
| 06 조세특례제한법               | 142 |
| 07 지방세특례제한법              | 143 |
| 08 국채법                   | 144 |

제6장 환류행정론 관련법령

|           |     |
|-----------|-----|
| 01 국회법    | 147 |
| 02 인사청문회법 | 151 |
| 03 국회사무처법 | 153 |



##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 제54조

-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 제55조

-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 **㉣**로 정한다.

## ■ 제65조

- ①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기출체크1

예산불성립시 헌법규정에 의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로 볼 수 없는 것은? 2017 국회9급 등 총4회

- ① 공무원 보수
- ② 명시이월비와 예비비
- ③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 ④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②는 해당되지 않음(「헌법」 제54조)

답 ②

**1** 준예산제도

## 기출체크2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회8급(수정)

- ①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국회는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부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연차적으로 앞당기기로 하였고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③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는 소관 부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포함된다.
- ④ 「국회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국회법」 제44조)

- ① [O] 「국가재정법」 제33조
- ② [O] 「헌법」 제54조

답 ④

**2**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5년 이내, 예외적으로 10년 이내, 국회의결로 연장 가능

**3** 국고채무부담행위

**4**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  
⇒ 조세법정주의





## ■ 제1조(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 억제

## ■ 제3조(적용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sup>1</sup>,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sup>2</sup>

## ■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sup>3</sup>

## ■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sup>4</sup>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sup>5</sup>

## ■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sup>6</sup>

② 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 포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sup>7</sup>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sup>1</sup> 동법은 행정부에만 적용되며, 국회(의원입법) 등 헌법 상 독립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sup>2</sup> 규제법정주의

<sup>3</sup> 규제최소주의

<sup>4</sup> 네거티브규제제도

기술체크1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5 지방9급

- ①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②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않고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 ③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형식을 갖는 규제체계를 의미한다.
- ④ 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제도(법 제5조의 2)

- ① [x] 대통령 소속(법 제23조)
- ② [x] 존속기한을 경함(법 제8조)
- ③ [x] 반대(법 제5조의 2)

답 ④

<sup>5</sup> 규제샌드박스제도

<sup>6</sup> 규제등록주의

<sup>7</sup> 규제영향분석제도

**■ 제1조(목적)**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향상

**■ 제2조(정의)**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하여 실시한다.

**■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1조(목적)**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

**■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sup>1</sup>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sup>2</sup>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sup>3</sup>
  9.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sup>4,5</sup>
-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sup>6</sup>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sup>7</sup>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제12조(국무회의)**

-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sup>1</sup> 제2항의 9개 중앙행정기관(3청 6위원회)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임

<sup>2</sup> 「행복도시법」 제38조(행복도시건설청의 설치 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둔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sup>3</sup> 「새만금사업법」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둔다.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sup>4</sup> 2024.5.27. 시행(2024.1.26. 「정부조직법」 개정)

<sup>5</sup> 「우주항공청법」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협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sup>6</sup>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 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다.

<sup>7</sup>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닌 것은? 2013 행정사 등 총3회

- ① 검찰청
- ② 병무청
-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④ 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법 제2조)

- ① [O] 법 제32조(단,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분리·개편(2026.10.2.)되면 틀린 지문이 됨.
- ② [O] 법 제33조
- ④ [O] 법 제34조

답 ③

## ■ 제19조(부총리)

-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 조정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 조정한다.

## ■ 제20조(국무조정실)

-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 · 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 · 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 제23조(기획예산처)

- 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 · 기금의 편성 · 집행 · 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 ②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 ■ 제27조(국가데이터처)

- ①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 · 데이터의 총괄 · 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를 둔다.
- ② 국가데이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제28조(지식재산처)

- ①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 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를 둔다.
- ② 지식재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제29조(행정각부)

-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 1. 재정경제부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 교육부
  - 4. 외교부
  - 5. 통일부
  - 6. 법무부
  - 7. 국방부
  - 8. 행정안전부

1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2024.5.)

기술체크2

다음 정부조직 중 행정 각부와 그 소속 외  
청이 잘못 연결된 것은? 2018 지방9급(수정)

- ① 기획재정부 – 특허청
- ② 국방부 – 방위사업청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상청
- ④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제당시 특허청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산업통  
상자원부** 소속 외청이었으나,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  
부로 분리·개편되고 특허청도 국무총리 소속 지  
식재산처로 확대·개편됨.

- ② [O] 법 제33조
- ③ [O] 법 제40조
- ④ [O] 「행복도시법」 제38조      답 ①

2 교육부로 이관(2024.6.)

기술체크3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 국가9급

-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  
률로 정한다.
-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 ③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 ④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리 소속

- ① [O] 「헌법」 제96조
- ③ [O] 법 제19조
- ④ [X] 정부 조직개편(2025. 10. 2.)으로 특허청  
이 지식재산처로 확대·개편되면서 중앙책  
임운영기관에서 지정 해제      답 ②④

■ 이재명정부 조직개편 주요내용(2025.10.1.)

- ① 기획재정부 ⇨ 기획예산처(예산)와 재정경제부(국고수지총괄)로 분리 · 개편(2026.12.)
- ② 검찰청 ⇨ 공소청(기소)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으로 분리 · 개편(2026.10.2.)
- ③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④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⑤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겸) 신설 및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겸) 폐지
- ⑥ 특허청 ⇨ 지식재산처(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
- ⑦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 ⑧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2차관 신설
- ⑩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제2차관 폐지)
- ⑪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 경찰의 독립성 강화

■ 제37조(행정안전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 재정 · 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 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 ⑥ 경찰청의 조직 ·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 ⑨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 ⑩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8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 · 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9조(문화체육관광부)

- ③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 ㉠을 둔다.

■ 제41조(산업통상부)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업 · 무역 · 공업 ·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 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2조(보건복지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 · 자활지원 · 사회보장 · 아동(영 · 유아 보육은 제외 ㉡) · 노인 · 장애인 · 보건위생 · 의정 및 약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 · 이용 · 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 제45조(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정책의 기획 ·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 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제1조(목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 제4조(공공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2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3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기출체크1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2018 군무원

- ①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 ② 공기업은 다시 자체수입의 비중 등에 따라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 ③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된다.
- ④ 공공기관은 매년 국무총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국무총리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법 제5조)

- ① [O] 법 제5조 제1항
- ② [O] 법 제5조 제4항
- ③ [O] 법 제5조 제4항

답 ④

### 1 동법 시행령 제7조(지정기준)

정원300명, 수입액200억, 자산30억 이상

### 2 동법 시행령 제7조(지정기준)

50/100(기금관리기관은 85/100)

### 3 동법 시행령 제7조(지정기준)

자산2조 & 자체수입비중 85/100

### 기출체크2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2023 군무원7급(수정)

- 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은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이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도 공공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의 일부를 세분하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5조 제3항

- ① [X] 정원 300인, 총수입액 200억, 자산규모 30억 이상(법 제5조)
- ③ [X] 지정할 수 없음(법 제4조)
- ④ [X] 지정할 수 있음(법 제5조)

답 ②



## ■ 제1조(목적)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

## ■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 제5조(기금의 설치)

-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 ■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 ①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 ②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③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 <sup>2</sup>)의 증가율 및 내역
  -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금액]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up>3</sup>.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 ·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등 7개 법률

### 기술체크!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 국가7급(수정)

-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 ·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다시 협의

①②③ [O] 법 제7조

답 ④

2 의무지출의 구체적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한다.

1.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5. 무역보험기금
6. 신용보증기금
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9. 외국환평행기금

금융성 기금



### ■ 제1조(목적)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 ■ 제3조(기본원칙)

-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①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둔다.

### ■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 ■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 기술체크1

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경찰간부

- ①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데이터는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의미한다.
- ③ 미국의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와 유사한 개념이다.
- ④ 데이터기반 행정은 행정의 정치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행정의 책임성·대응성 및 신뢰성 제고가 목적 (법 제1조)

①② [O] 법 제2조

답 ④

## 기술체크2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 지방9급

- ①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②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 ③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경청, 주장, 철학, 신념, 담론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객관적 행정 지향

- ① [O] 2020년 법 제정
- ② [O] 법 제2조
- ④ [O] 법 제6조

답 ③

## ■ 제1조(목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 제2조(정의)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 ■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및 데이터 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 분석등의 절차 및 방법 등
2. 메타데이터의 관리 방법

## ■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1조(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

**■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①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기출체크1**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2020년 개정된 ‘데이터 3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2025 국가7급

- ① 개인정보 보호법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③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의 상호유기적 개정(2020)으로 가명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체계임. ③은 포함되지 않음.

답 ③

**■ 제1조(목적)**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sup>1</sup>
2. 시, 군, 구 <sup>2</sup>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sup>3</sup>.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 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도시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 제외)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 변경 포함)

2024 김중규 선행정학

- 자치단체 종류 p.805
- 사무배분 p.824
- 주민감사청구 p.863
- 조례 p.772
- 지방의회 p.816
- 집행기관 p.818
- 지방예산 p.840
- 분쟁조정 p.797
- 광역행정 p.799
- 중앙통제 p.790
- 특별자치단체 p.801

**1** 광역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3** 2023.6.7 개정

**기출체크1**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가9급 등 총10회

- ①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시·군의 경우와 같다.
- ② 특별시·광역시·도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 ③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 ④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르게 할 수 있음(법 제2조)

- ② [O] 법 제2조
- ③ [O] 법 제3조
- ④ [O] 법 제3조

답 ①

**기출체크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방9급

- ①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 ② 기관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③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④ 기관통합형이 아닌 **기관대립형의 장점**

- ① [X] 출제 당시에는 옳은 지문이었으나 2022. 1. 동법 개정으로 현재는 틀린 지문(법 제4조)

답 ①④

## [특별지방자치단체]

### ■ 제199조(설치)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 ■ 제200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 제201조(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 ■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 ■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 ■ 제206조(경비의 부담)

-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제209조(해산)

- ①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 기술체크27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국가9급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④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겸할 수 있음(법 제205조)

- ①② [O] 법 제199조
- ③ [O] 법 제204조

답 ④

#### 기술체크28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 지방9급

-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 ① [O] 법 제199조
- ② [O] 법 제199조
- ③ [O] 법 제204조

답 ④

1 별표 5

2. 전문위원은 일반직으로 하되,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

■ 전문위원 등의 신분과 직급

|      |            |                    |       |               |
|------|------------|--------------------|-------|---------------|
| 지방의회 | 전문위원       | 일반직(원칙)<br>별정직(예외) | 시·도   | 4급 및<br>5급 이하 |
|      |            |                    | 시·군·구 | 5급 및<br>6급 이하 |
|      | 정책지원관      | 일반직                | 시·도   | 6급 이하         |
|      |            |                    | 시·군·구 | 7급 이하         |
| 국회   | 수석<br>전문위원 | 별정직(1급 상당)         |       |               |
|      | 전문위원       | 일반직(2급)            |       |               |

기술체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5 국회8급

- ㄱ.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 ㄴ. 전문위원은 위원회 소속으로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의회사무기구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 ㄷ.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모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ㄹ. 시·도의 경우 전문위원은 4급 및 5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명하고, 정책지원관은 6급 이하로 임명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ㄱ [O]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 ㄴ [X] 의회사무기구 소속, 소속위원회사무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지만 그외 일반 사무는 의회사무기구장의 지휘·감독(영 제15조)
- ㄷ [X] 정책지원관은 일반직,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영 제15조)
- ㄹ [O] 영 제15조

답 ②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D

1949.8. 제정 / 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 ②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 5 ■와 같다.
- ③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 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⑤ 의회사무기구(위원회 포함)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 ⑥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기술체크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7급 지방자치론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상환과 이자 지급에 관하여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
- ③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9조)

- ① [O] 법 제36조의 2
- ② [O] 법 제11조 제5항
- ④ [O] 「지방자치법」 제142조

답 ③

## 기술체크2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018 지방7급 등 총3회

-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③ 지방공기업의 손실 보전
- ④ 지방채의 차환

③은 해당하지 않음(법 제11조)

- ①②④ [O] 법 제11조

답 ③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지방채의 종류)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 ■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

## ■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제9조(회계의 구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 ①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 ■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sup>1</sup>
-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sup>2</sup>

<sup>1</sup>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부담금(이론상)

<sup>2</sup>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위탁금(이론상)

### ■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 ■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http://www.kaspa.co.kr) TEL. 02-532-5280~1  
[gong.conects.com](http://gong.co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6판 2025년 11월 7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ISBN 979-11-92405-80-3

값 19,000원

